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
----------	----

제출년월일 : 1998. 12. 21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사유

- 가. 현행 상수도 요금은 톤당 478.4원으로 총괄 생산원가 1,050.4원에 훨씬 못미치므로서 매년 약10억9천여 만원의 결손액이 누중되어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의 보전을위한 각종 기채의 도입으로 경영악화의 요인은 물론,
- 나. 날로 증가하는 주민행정서비스 수요와 최근 우리지역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봉평일대가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되는등 상수도 시설의 확장 및 투자가 시급한 반면 낮은 수도요금과 군재정력 빈곤으로 대부분의 투자비를 기채로 충당한 결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 다.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119.5%를 인상하여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용가의 물가부담과 IMF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회에는 평균 40%를 인상하고,
- 나. “물 소비량이 가장많은 ”가정용“중에서 구간 10~20m³(기본구간)과 11~20구간까지의 누진율을 개선하여 절수를 유도하고,
- 다. IMF체제를 맞이하여 지역상권 부양과 경기회복을 위해 영업용의 인상분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대신 사치 소비성향이 짙은 옥탕2종의 인상분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였으며,

라. 그간 근거가 빈약하였던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과 양로원, 경로당, 노인회관, 영·유아원, 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의 조례 삽입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마. 지금까지 요금부과 실적이 전무했던 전용공업용의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추후 공업단지 입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라. 입법예고 : '98. 11. 27~12. 14(주민접수의견2건 별첨)

마. 기 타 : 물가대책위원회심의필조서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모범음식점, 양로원, 보육원, 경로당, 노인회관, 영·유아원, 유치원 등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업종별요율표

구분 업종별		월 기본료		초과요금		비고
		용량 (단위:㎡)	금액 (단위:원)	용량 (단위:㎡)	금액 (단위:원)	
가정용	0~10	2,040	11~20	370		
			21~30	460		
			31~40	550		
			41~50	570		
			51이상	850		
영업용	0~30	16,540	31~50	820		
			51~100	1,010		
			101이상	1,300		
욕탕용	1종	0~200	100,690	201~300	1,080	
				301~500	1,270	
				501이상	1,720	
	2종	0~200	171,000	201~300	1,800	
				301~500	2,460	
				501이상	2,950	
업무용	0~20	10,850	21~50	780		
			51~100	970		
			101~300	1,120		
			301이상	1,190		
전공업용	㎡당	450				

관 계 법 령 발 취 서

수 도 법

제23조(공급규정)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8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37조(요금등의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요금등의감면) 군수는 모범 음식점, 양로원, 보육원, 경로당, 노인회관, 영·유아원, 유치원등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2」			「별표2」		
업종별	단계별 (㎡)	요 율 (원)	업종별	단계별 (㎡)	요 율 (원)
가정용	0~10㎡	1,460	가정용	0~10㎡	2,040
	11~20	260		11~20	370
	21~30	320		21~30	460
	31~40	390		31~40	550
	41~50	420		41~50	570
	51㎡이상	620		51㎡이상	850
영업용	0~30㎡	13,780	영업용	0~30㎡	16,540
	31~50	680		31~50	820
	51~100	840		51~100	1,010
	101㎡이상	1,080		101㎡이상	1,300
육 탕 1 종	0~200㎡	71,920	육 탕 1 종	0~200㎡	100,690
	201~300	770		201~300	1,080
	301~500	910		301~500	1,270
	501㎡이상	1,230		501㎡이상	1,720
육 탕 2 종	0~200㎡	118,180	육 탕 2 종	0~200㎡	171,000
	201~300	1,170		201~300	1,800
	301~500	1,640		301~500	2,460
	501㎡이상	2,150		501㎡이상	2,950
업무용	0~20㎡	7,750	업무용	0~20㎡	10,850
	21~50	560		21~50	780
	51~100	690		51~100	970
	101~300	800		101~300	1,120
	301㎡이상	850		301㎡이상	1,190
전 용 공업용	㎡당	300	전 용 공업용	㎡당	450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평 창 군

우 232 - 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 전화(0374) 330 - 2521 / 전송 333 - 6356
 도시경제과(본청3층) 과장 석명준 지방토목주사 정근성, 담당자 전제준

문서번호 도경 58442 -

시행일자 1998. 12. . (년)

(경유)

받음 내부결재

참조

취급		군 수
보존	년	1998. 12. 1
부군수		
과 장	전 결	
기안	전 제	담당자 정근성
		협 조

제목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도경 58442 - 556('98. 11. 23)호의 관련입니다.
2. 위 관련호에 의거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 공고기간 : '98. 11. 27~12. 14(20일간)
- 공고장소 : 군보및읍면게시판
- 주민의견 : 접수2건

일련 번호	의견제출자		접 수 자 의 건	접 수 의 건 에 대 한 주 무 부 서 처 리 계 획	비 고
	성 명	주 소			
1	남진삼	대화면 대화리 1번	가정용은 적정 영업용, 업무용은 너무많이 오름	가정용은40%이상, 영업용은20%이상으로인상을 이 가정용에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업무용은 실 질적으로 실수요자들과는 관계없음	원안대 로처리
2	최홍규	대화면 대화리 1001-8	현요금이 적정 어쩔수없이오른다면10%이내요망	100%이내인상으로는 인상이미 없음	원안대 로처리

붙임 : 주민의견서2부. 끝.

평 창 군 수

심 의 의 결 조 서

- 안 건 : 평창군 상수도요금 인상안 심의 의결
- 근거법령 : 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 2항
- 심의내용 : 상수도요금 40% 인상(업종별 요율대비표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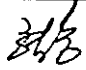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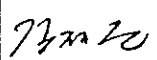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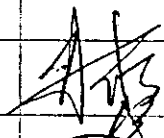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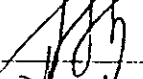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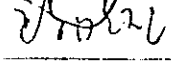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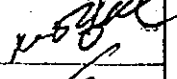
상기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가 결 부 결

1998년 11월 일

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권 혁 승

평창군 상수도요금 인상안 심의조서

직 위	위 원			심의내용		서 명
	소 속	직 위	성 명	가	부	
위원장	평창군	군수	권혁승	○		
부위원장	“	부군수	김재군	○		
위원	평창교육청	교육장	이강진			
	평창군의회	의 원	김진석			
	농협군지부	지 부 장	신상복	○		
	평창축협	조 합 장	이상국			
	음식업지부	지 부 장	이용선	○		
	군번영회	회 장	임정규	○		
	강원일보	주재기자	황만진	○		
	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최귀녀			
	군세마을부녀회	회 장	엄덕순			
	용평리조트노조	노조대표	김유인	○		
	평창군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	환경복지과장	박정자			
	“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	재무과장	신영선	○			
“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